

# 우리나라 株主提案制度에 관한 小考

— 제도로서의 기능화 측면에서 본 문제점을 중심으로 —

權 鍾 浩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助教授)

## < 目 次 >

### I. 序說

1. 주주제안권의 취지 및 기능
2. 주주제안권의 도입

### II. 주주제안권에 대한 법규제

1. 주주제안권의 유형
2. 현행 법규제의 내용

### III.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의 문제점

1. 주주제안권의 제한적인 기능범위와 엄격한 지주요건
2. 반대제안의 불가능과 해임제안의 불허
3. 주주제안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권의 이사회 전속

### IV.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의 개선방안

1. 지주요건상의 문제
2. 권고형제안의 도입여부

### V. 결어

## I. 序 說

### 1. 주주제안권의 취지 및 기능

주주제안권은 주주에게 회사측이 議事日程으로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의제를 추가하거나 회사측이 부의하는 의안과 다른 의안을 제안하고, 이와 아울러 제안이유에 관해 다른 주주를 상대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의 주도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이른바 주주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를 실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97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를 통해서이며<sup>1)</sup> 주주의 권익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도입취지였다.<sup>2)</sup> 그러나 증권거래법상은 대상회사가 상장법인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sup>3)</sup> 협회등록법인을 포함하여 대다수 회사의 주주는

1) 1997년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崔基元, "改正證券去來法과 商法特例規定" 「人權과 正義」 248호(大韓辯護士協會誌, 1997) 66쪽 이하 참조. 1998년에도 대상회사의 범위를 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2) 證券監督院, 「證券去來法 改正內容 解說」(1997) 293쪽.

주주제안권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를 해결하는 한편 이른바 IMF사태를 배경으로 주주의 감시기능강화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1998년에는 상법개정을 통해 상법상의 제도로서 도입되기에 이르렀고(상법 제363조의 2), 그 결과 주주제안권은 현재 모든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리(소수주주권)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도입하면서도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해 둔 관계로 주주제안권에 대한 법규제는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주주제안권의 기능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①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의 참여기회 보장, ②주주와 경영자간 또는 주주 상호간의 대화 촉진, ③경영자에 대한 감시·통제기능 제고, ④정보공시의 촉진, 그리고 이러한 기능의 총체로서 ⑤주주민주주주(participatory stockholder democracy) 및 회사언론자유(corporate free speech)의 실현, ⑥경영자책임의식의 고양, ⑦주주총회의 활성화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sup>5)</sup>, 이는 주주제안권이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과 주주제안권은 원래 그것이 행사되어 가결되었을 때 이상으로 그 과정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큰 제도라는 점<sup>6)</sup>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제안권은 이러한 순기능적인 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주제안권은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관계로<sup>7)</sup> 남용의 위험이 상존하며, 또한 경영자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해서 주주제안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영권침해라는 이른바 “기관권한분배

- 3) 주주제안권을 증권거래법을 통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에 국한하는 권리'로서 인정한 것의 문제점으로서의 첫째 제도의 도입취지라는 측면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주주의 권익보호의 문제는 상장회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둘째 주주제안권과 같이 주주권리에 관한 사항이며 이른바 회사내부 기관간의 권한분배문제와도 관련하는 사항을 공법적 색채가 강하며 투자판단에 직면한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규제법원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李哲松, “少數株主權의 實效性 檢討” 「上場協」 35호(韓國上場會社協議會, 1997 春季號) 25쪽, 權鍾浩, “經營者監視手段으로서 委任狀勸誘의 實效性 — 一株主公開買受 및 株主提案權과의 比較를 통하여 —” 「商事法研究」, 17권 1호(韓國商事法學會, 1998) 137쪽 참조.
- 4) 이와 관련하여 주주제안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어느 법을 우선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적어도 해석론상은 상장회사의 경우는 증권거래법, 그 이외의 회사는 상법이 적용되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없는 규정은 상법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5) Comment, The 1983 Amendments to Shareholder Proposal Rule 14a-8: A Retreat from Corporate Democracy?, 59 Tul. L. Rev. 161, 162-64, 194-95(1984), 前田重行, 「株主總會制度の研究」(有斐閣, 1997) 175쪽, (주 25) 참조.
- 6) 이 점은 주주제안이 실제로 가결되는 예가 극히 적은 사실을 근거로 주주제안제도의 실효성에 관해 의심하는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서 주로 제시되는 논거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제안제도의 도입이 극히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주제안의 사례는 거의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300 내지 400개 회사에서 총 900건 정도의 주주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See ①Proposed Rule: Amendments to Rules on Shareholder Proposals, Release No. 34-39093; IC-22828; File No. S7-25-97, [hereinafter Proposed Release] at 3.). 그러나 이러한 제안 숫자에 비해 주주제안이 가결된 예는 극히 미미한데, 1997년의 경우 IRRC의 자료에 의하면 374건의 주주제안 중 가결된 것은 22개에 지나지 않는다(See ②Final Rule: Amendments to Rules on Shareholder Proposals, Release No. 34-40018; IC-23200; File No. S7-25-97, [hereinafter Final Rules] at 17.). 참고로 이상의 Release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①의 경우는 <http://www.sec.gov/rules/proposed/34-39093.htm>, ②의 경우는 <http://www.sec.gov/rules/final/34-40018.htm> 가 그 주소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98년에 주주제안권에 관한 위임장규칙의 개정이 있었는데, ①은 그 시안으로서 발표된 것이고, ②는 최종안이다.
- 7) 이점은 우리나라의 주주제안권을 포함하여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만 타당하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에는 주주제안에 있어서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안주주가 부담한다(1985년 회사법 § 376(1), § 377(1)(b)).

원칙"의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주주제안권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노동문제, 인권문제 등 사회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혹은 이른바 그린메일(green mail)을 목적으로 경영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주주제안권은 오히려 회사측에 부담만 줄 수도 있다.

주주제안제도는 그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이처럼 주주의 권익을 신장하고 이른바 "열린 주주총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경영상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주주총회를 사회운동의 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등 그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제안권에 대한 법규제는 제도로서의 기능화라는 측면과 함께 역기능의 억제라는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제의 내용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제도도입 그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역기능의 억제라는 측면에서의 고려는 제안주주의 자격에 대한 규제만으로 국한되고 있으며,<sup>8)</sup> 특히 주주제안권이 제도로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제도로서의 기능화" 측면에서의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도로서 기능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9)</sup> 다만 본고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제안주주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 본고에서 검토하고, 그 이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別稿<sup>10)</sup>로 다루기로 한다.

이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주주제안권의 도입이 갖는 의

8) 역기능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의 문제점으로서 (i)상법의 경우에는 실제적 요건에 관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제안주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부결된 제안을 연속적으로 제안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그리고 (ii)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공통하는 문제점으로서 제안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1인의 주주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수십건의 제안을 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i)에 대해서는 해석론으로서 이른바 주주권남용의 법리를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주제안권의 행사에 회사의 이익을 해할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은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부결된 의안에 관해서는 일정기간 제안을 금지"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 21 제3항 2호에 해당하는 조항을 상법에서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ii)의 문제의 해결책은 1인의 주주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제출할 수 있는 "주주제안의 수"를 일정 범위내로 제약하는 것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제안수에 대한 제약이 없었으나, 1인의 주주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5건씩이나 제안을 하는 등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을 계기로 1976년 개정에서 제안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그후 1983년 개정에서 다시 1건으로 제한한 경위가 있다. 주주제안의 수를 이처럼 제한한 것은 기본적으로 남용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특히 제안수를 2건에서 1건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남용방지보다는 회사자산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omment, supra note 5, at 177).

9) 참고로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에 대한 해석론적 관점에서의 고찰은 朴贊雨, "株主提案權" 「比較私法」 제6권 1호(韓國比較私法學會, 1999) 445쪽 이하가 상세하다.

10) 權鍾浩, "우리나라 株主提案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制度로서의 機能化 측면을 中心으로 -" 「上場協」(韓國上場會社協議會, 2000 春季號) 23쪽. 참고로 이 논문은 본고와의 관계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필자 나름의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일주제에 관해 이처럼 각각 따로 집필한 이유는 필자에게 허락된 紙面의 제한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 먼저 독자의 양해를 구하며, 본고와 함께 「上場協」에 게재 예정인 위의 논문도 아울러 보아 준다면 필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

의에 관하여 제도적 관점에서 간단히 언급해 둔다.

## 2. 주주제안권의 도입 의의

우리나라에서 주주제안제도의 도입이 갖는 의의의 첫째는 말할 필요도 없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가 독자의 의제로써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주주제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회사측이 소집하는 주주총회를 위하여 주주는 독자의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방법이 없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나 공고에 “회의의 목적사항”(즉 의제)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상법 제363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즉 의제)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결정할 권한(의제결정권)은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인 점(상법 362조)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전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주는 이사회가 제시한 의제와 이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통해 단순히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기껏 動議 형태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번의 주주제안권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둘째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보완·대체하는 권리로서 주주제안권이 갖는 의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주제안권이 도입되기 전에는 회사측이 소집하는 주주총회를 위하여 주주가 스스로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주주가 독자의 의제를 제안하려면 상법 제366조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회사측이 소집하는 주주총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차면에서도 먼저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때 이사회가 지체없이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또 다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66조 1항 및 제2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주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의 제도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소집청구권에 대신하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은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i)회사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주에게 제공한다는 측면과 함께 (ii)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보완·대체하는 권리로서 그 의의를 지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른바 주주운동과 관련해서도 주주운동을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이다.<sup>11)</sup>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액주주운동단체나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기업구조조정, 임원의 선임(집중투표제도), 회사지배구조개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sup>12)</sup>, 이 경우 주주제안권을 이용하게 되면 총회장에서 질문이나 動議제안의 형태로 주주운동을 전개할 때에 비해 회사측이

11) 前田重行, (주 5) 153쪽. 다만 주주제안권이 주주운동의 주장을 어느 정도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흡수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주제안의 범위에 대한 법규제에 달려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12)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475호(1999. 3. 2) 20쪽.

제시한 의제내로 주주운동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회사측과의 충돌로 인해 주주총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 없이 효과적으로 주주운동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 주주제안권에 대한 범규제

주주제안권에 대한 범규제는 제안주주의 자격 및 제안절차에 대한 요건(이하 “절차적 요건”)과 제안범위에 대한 요건(“실체적 요건”)의 양면에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비교법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주주제안권을 유형화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1. 주주제안권의 유형

#### (1) “의제추가제안형” · “위임장권유형” · “혼합형”

주주제안권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영국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의제추가제안형, 둘째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위임장권유형, 그리고 셋째는 일본으로 대표되는 혼합형(서면투표형 + 의제추가제안형)이다.<sup>13)</sup>

먼저 (i) “의제추가제안형”은 주주제안권을 의제의 추가제안권 그 자체로서 구성하는 입법례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적법한 주주제안이 이루어지면 당해제안이 회사측의 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되거나 혹은 회사측에 의해 일반주주에게 통지될 뿐, 당해제안에 관해 주주가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서면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주주제안권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질 의제·의안이 주주에 의해 추가로 제안되었다는 사실을 일반 주주에게 공지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당해제안에 관해 주주가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ii) “위임장권유형”은 주주제안권을 단순한 의제의 추가제안권으로서만이 아니라 회사측의 위임장권유자료(proxy materials)<sup>14)</sup>를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성한 입법례이다. 이 유형은 적법한 주주제안이 이루어지면 회사측의 위임장권유절차에 따라 제안내용을 기재한 서

13) 이러한 유형화에 관해서는 前田重行의 (주 5)서의 제4장 1절 “株主提案權の意義と機能”으로부터 많은 시사를 얻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 관한 상세는 權鍾浩, (주 10) 논문 28쪽이하 참조.

14) 참고로 위임장자료(proxy materials)는 위임장설명서(proxy statement)와 위임장용지(proxy form)를 합친 개념임에 주의를 요한다.

면(위임장설명서 · proxy statement)과 함께 당해제안에 관해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용지 · proxy form)이 주주에게 송부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는 제안사항을 일반주주에게 공지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 제안에 관해 회사측의 위임장권유자료를 이용하여 주주가 직접 찬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안사항에 관한 찬반의 의사표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위임장용지에 찬반의 표시를 하여 이것을 회사측에 반송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형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비용'(다만 주주제안권의 행사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으로 주주가 위임장권유를 행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iii) "혼합형"은 회사의 규모와 주주 수를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제안권을 "서면투표형"으로 구성하고, 그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는 "의제추가제안형"으로 구성하는 입법례이다. 다만 서면투표형은 제안사항에 관하여 주주가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 서면이 위임장용지가 아니라 서면투표용지(보다 정확히는 의결권행사서면)라는 점에서 위임장권유형과 차이가 있을 뿐이고,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주주가 제안사항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서면투표형은 위임장권유형과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2) 유형상의 특징

주주제안권은 이와 같이 비교법적으로 보면 형식상으로는 크게 3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제추가제안형"과 "위임장권유형"의 2유형으로 대별되는데, 이러한 유형상의 차이는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제안주주가 제안내용에 관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이하 "일반주주"라 함)에게 직접 찬반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위임장권유를 따로 행할 필요가 있는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주주제안권의 행사만으로 제안사항에 관해 일반주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i) "의제추가제안형"의 주주제안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제안사항을 일반주주에게 공지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 때문에 위임장권유를 따로 행하지 않으면 제안주주는 자신의 제안에 관해 일반주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길이 없는데 반해, (ii) 위임장권유형은 제안사항에 관한 찬반의 표시가 가능한 서면이 일반주주에게 제공되므로 위임장권유 없이도 일반주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주주제안권이 의안추가제안형이나 위임장권유형이냐의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는 소액의 분산주주가 주주구성에 있어서 대부분을 이루는 대규모 공개회사를 전제로 할 경우 주주제안권의 이른바 '제도로서의 기능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규모 폐쇄회사와는 달리 대규모 공개회사는 주주의 주주총회의 출석율이 극히 저조하며,

주주의 의결권행사(즉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대부분 회사측의 위임장권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sup>15)</sup> 따라서 이러한 회사에서 주주제안권이 제도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제안사항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표시(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의제추가제안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의제추가제안형은 총회출석주주에 한해 제안사항에 관해 의사표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 (3) 우리나라 주주제안권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은 어느 유형에 속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주의 총회출석권이 저조한 대규모 공개회사를 전제로 할 경우 정당화되기 어려운 "의제추가제안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주주제안이 이루어지면 이사회는 의제제안권의 경우에는 제출된 의제를 주주총회의 의사일정의 일부로서 소집통지·공고에 기재하여야 하고, 의안제안권의 경우에는 그것이 의제제안권과 같이 또는 회사측의 의제에 대한 수정·반대제안으로서 단독으로 행사된 때에는 제출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하여야 하지만(상법 제363조의 2 제2항·3항,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제2항), 이 때 회사측에 의해 주주제안에 관해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서면까지 주주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16)</sup>

## 2. 현행 법규제의 내용

우리나라의 주주제안권에 대한 법규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법에 있어서는 제안주주의 자격에 대한 요건과 제안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 외 예컨대 ①주주제안권을 이른바 "의제추가제안형"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이나 ②주주제안권의 행사절차, 그리고 ③제안주주가 제안이유에 관한 설명을 원할 경우 서면을 통한 설명은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주주총회에서의 구두설명만 허용하고 있는 점(상법 363조의 2 제3항, 증권거래법 191조의 14 제2항) 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하 논술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제안권에 대한 증권거래법의 규제와 상법의 규제를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으로 나누어 대비하는 형태로 기술하기로 한다.

15) Lewis D. Solomon, Donald E. Schwartz, Jeffrey D. Bauman, Elliott J. Weiss, Corporation Law and Policy — Materials and Problems — 4th Ed. (West Group, 1998) at 596.

16) 상세는 權鍾浩, (주 3) 논문 138~140쪽 참조. 참고로 동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주제안권을 "기제청구형"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말하는 "의제추가제안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1) 절차적 요건

증권거래법은 지주요건에 관하여 비율기준과 함께 지주기간기준을 병용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비율기준만 채택하고 있으며, 그 기준도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것이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 양법의 유일한 차이이다.

즉 증권거래법은 (i)자본금 1000억원을 기준으로 ①그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 이상”, ②그 이하의 회사는 “1000분의 10 이상”이라는 “비율기준”과 함께, (ii)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지주기간요건”을 병용하고 있다(증권거래법 191조의 14 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 21 제1항).<sup>17)</sup> 이에 반해, 상법의 경우는 (ii)의 지주기간요건은 채택하지 않고, 단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상법 363조의 2 제1항). 이와 같이 제안주주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채택한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 제안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특히 비율기준에 관하여 증권거래법과 상법 사이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기업규모에 따른 주식발행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주요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배려 때문이다.

그리고 적법한 주주제안을 하려면 이러한 지주요건의 충족 이외에도, 총회일 6주 전까지 이사에 대해 서면으로 제안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상법 363조의 2 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 21 제2항),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둔 것은 주주총회소집통지의 발송이 총회일 2주전(공고의 경우에는 3주전)에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상법 363조 제1항, 3항) 회사측의 업무처리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2) 실체적 요건

주주제안권에 관해 상법의 경우는 (i)동법 제363조 제1항에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의제)(예컨대 이사선임의 건)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제제안권”), (ii)제 2항에서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한 경우, 그 의안의 요령(요지), 즉 구체적인 결의안(예컨대 홍길동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총회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안제안권”)<sup>18)</sup>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①에

17) 다만 주식의 보유 형태에 관해서는 ①주식의 소유 뿐만 아니라, ②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 취득, ③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도 인정된다(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 20 제2항).

18)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우리나라 상법 363조의 2 제2항이 전제로 하는 의안제안권은 ①특정 의제에 관한 의안의 요령(결의안)을 총회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②특정 의제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총회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 중 ①의 경우는 총회장에서 勸諭형태로 이루어지는 제안권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회의의 일반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런 의미의 의안제안권은 법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된다.

관해서만 명문규정을 두고 있을 뿐(증권거래법 191조의 14 제1항) 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의안제안권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sup>19)</sup>, 법 적용의 일반원칙상 상법상의 주식회사 가운데 상장회사와 협회등록 회사에 대한 특례를 정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sup>20)</sup>

그리고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주주제안의 종류를 ①임원(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을 위한 이른바 “선거제안”, ②경영정책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정책제안”, ③회사측의 제안을 수정·변경 혹은 반대하기 위하여 하는 이른바 “반대제안”의 3유형으로 나눌 경우, 상법에서는 제안 내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상법 363조의 2 제3항)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상법 361조)인 한 원칙적으로 위의 3 유형은 모두 인정된다.<sup>21)22)</sup> 이에 반해 증권거래법에서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령(84조의 21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도 주주제안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증권거래법 191조의 14 제3항) 그 사정은 다르다.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同 1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2호), ㉢주주의 개인고충에 관한 사항(3호), ㉣합병·영업양수 또는 양도 및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4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5호),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6호),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7호)의 총 7개 사항이다.<sup>23)</sup> 따라서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권에 있어서는 ①정책제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①)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제약

19) 李泰魯·李哲松, 「會社法講義」 [제7판](1999) 399쪽.

20) 鄭義鐘, “改正 商法上の 株主提案權” 「人權과正義」 (大韓辯護士協會誌, 1999) 제270호 56쪽.

21)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측의 제안내용을 보고 이를 반대하기 위해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반대제안은 법제도상 불가능하다(후술의 Ⅲ. 3.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반대제안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회사의 의안과 상충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이 사후적으로 우연히 병존하게 되는 경우의 주주제안을 뜻한다.

22) 다만 주주총회결의 사항 가운데 그 성질상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제안을 하더라도 주로 권고형일 가능성이 큰 사항, 예컨대 합병, 회사의 계속, 영업양도·양수, 자본감소, 해산 등의 경우에는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金元基, “상법(개정안)상의 株主提案權” 「考試研究」 (1998. 10) 47쪽). 이에 대해 권고적 제안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며 또한 명문으로 주주제안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며 다만 현실적으로는 권고적 제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朴贊雨, (주 9) 456쪽).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적어도 해석문으로서의 권고형 제안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IV. 2. 참조) 이러한 사항에 관한 제안일지라도 구속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만 제안(예컨대 A회사에의 영업양도제안)이 가결되어도 그 실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A회사가 영업양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제안에 대한 총회결의는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상 합리적일 것이다.

23) 이러한 제안금지사유는 합리성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사적인 문헌으로서 李泰魯·李哲松, (주 19) 400쪽, 李哲松, (주 3) 12~13쪽 참조.

요인이 될 수 있음), ②선거제안의 경우도 해임제안은 인정하지 않은 채 선임제안만 허용하고 있다.

### III.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의 특징으로는 먼저 ①회사측이 소집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새로운 의제 및 의안의 요령을 총회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만 구성할 뿐(이른바 “의제추가제안형”), 제안사항에 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서면까지 주주에게 제공되는 권리로서는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외 다음 사항도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②제안주주의 자격에 관해 “절대수기준”(예컨대 〇〇〇주 이상)이나 “금액기준”(시가 〇〇〇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혹은 액면가 〇〇〇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병용하는 것 없이 “비율기준”만 채택하고 있으며, 그 기준 또한 지나치게 높다는 점, ③주주제안권을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으로 구성하면서 그 행사시기에 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총회일 6주전으로 통일하고 있는 점, ④제안이유에 관한 설명기회는 총회장에서의 구두설명으로 제한되며, ⑤주주제안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권은 이사회에 전속하는 점(상법 363조의 2 제3항, 증권거래법 191조의 14 제2항 참조), 그리고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본고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만 지적하면 ⑥증권거래법의 경우 임기중의 임원의 해임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사항이지만, 동시에 주주제안권이 우리나라에서 제도로써 제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이거나 입법상의 불비라고 생각되는 사항, 즉 제도로써의 기능화 측면에서 본 입법상의 문제점들이기도 하다. 이하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1. 주주제안권의 제한적인 기능범위와 엄격한 지주요건

##### (1) 주주제안권의 제한적인 기능범위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총회소집통지나 공고에 제안사항을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하고, 제안이유에 관한 설명도 총회장에서의 구두설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때문에 주주로서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는 한 제안사항에 관하여 의결권행사는 물론이고 제안내용에 관하여 제안주주로부터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데, 주주제안권이

이와 같이 주주총회라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소수의 출석주주만을 대상으로 기능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폐쇄회사의 경우라면 몰라도 주주의 총회출석률이 저조한 대규모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주가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결의 과정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주제안권의 “제도로서의 기능화 요청”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강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주주제안권을 증권거래법을 통해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권은 동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특징, 즉 “주주의 총회출석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증권거래법은 이러한 고려없이 중소기업의 폐쇄회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상법과 마찬가지로 주주제안권을 의안추가제안형으로 구성하고 제안이유에 관한 설명기회도 총회장에서의 구두설명으로 제한함으로써 — 즉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 한해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결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 결과적으로 대규모 공개회사의 경우는 대다수의 주주가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결의 과정으로부터 배제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 (2) 엄격한 지주요건

제안주주의 지주요건에 관하여 (i)상법은 ①비율기준만, (ii)증권거래법의 경우는 ①과 함께 ②지주기간기준을 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주주제안권의 “제도로서의 기능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되는 이유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며 또한 엄격하다는 점이다.

지주요건은 기본적으로 남용방지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주주제안권을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sup>24)</sup>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는 달리 제도로서의 기능화 측면에서 절대 중요한 이른바 “절대수기준”이나 “금액기준”을 병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제안권은 소수의 대주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제안주주의 지주요건에 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상장회사나 협회등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0.5% 혹은 1%, 그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면 우리나라의 특히 대규모 공개회사의 주식소유실태를 고려할 때 주주제안권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회사경영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주주제안권은 지주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주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sup>25)</sup>,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

24) 참고로 영국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 이상(1985년 회사법 §376(2)(a)) 또는 1인당 평균 100 파운드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00인 이상(§376(2)(b)), 미국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시가 2000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의 소유(위임장규칙 §14a-8(b)(1)),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300주 이상의 주식소유(상법 232조의 2 제1항)를 요구하고 있다.

주제안권은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보완·대체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도 적어도 주주총회소집청구권보다는 지주요건이 낮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행법은 소수주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법에서는 주주제안권과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의 지주요건에 관해 어떠한 차등도 두고 있지 않다.<sup>26)</sup>

## 2. 반대제안의 불가능과 해임제안의 불허

### (1) 진정한 의미의 반대제안의 불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측의 제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정, 변경 혹은 반대하는 제안을 한다는 의미의 진정한 반대제안은 법제도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총회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전(공고의 경우는 3주전)에 발송되는데 반해(상법 363조 제1항, 3항),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은 모두 다 총회일 6주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사전제안제도). 이와 같이 현행법에 의하면 주주제안권의 행사시점에서는 회사측의 제안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제안권이 회사측의 제안을 비판·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제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주제안권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는 데에는 현행 기업관행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의해 의안의 요령까지 총회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상법 433조 제2항, 438조 제2항, 522조 제2항 등)를 제외하고는, 총회소집통지나 공고에는 의제만 기재하고 그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의안의 요령에 관해서는 주주총회 당일에 발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설령 소집통지나 공고가 주주제안권의 행사시기보다 전에 이루어지더라도 의안의 요령에 관한 기재가 강제되지 않은 의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반대제안은 불가능하게 된다.

25) 미국의 경우 주주제안권의 의의에 관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 상호간 혹은 주주와 경영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주주제안권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것은 아니며, 주주는 ①독자적으로 위임장권유(proxy solicitation)를 하거나 혹은 ②경영자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업경영에 관하여 이른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제안권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위의 ①·②의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되는데 반해, 주주제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주요건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논자 중에는 주주제안권의 실질적 의의는 비교적 적은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게 회사측의 총회소집절차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제안과 나란히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Proposed Release, supra note 6, at 2).

26) 주주제안권과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의 지주요건은 상법상은 모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다(동법 제366조, 제363조의 2참조). 이에 반해 증권거래법은 주주제안권의 경우는 100분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이지만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은 100분의 3(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이다(동법 191조의 13 제4항).

(2) 해임제안의 불허

현행 증권거래법은 해임제안은 인정하지 않는 채 선임제안만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문제는 이사의 해임이 명백히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조차 주주는 해임을 제안할 수 없다는 점 뿐만 아니라, 선임제안조차도 회사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소액주주운동과 외국인 지분비율의 증가 등을 계기로 주주제안권이 경영권도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는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의 최대수를 규정하고 그 수만큼 이사를 선임하여 두고 있다.<sup>27)</sup> 이 경우에는 이사 모두가 임기 중인 한 선임제안을 인정하여도 그것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게 된다.

비교법적으로 선거제안(선임 및 해임제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때문에 기존의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제안은 물론이고 임기중의 이사를 부적격자로 하는 내용의 이사자격요건에 관한 제안조차도 금지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이른바 적대적 M&A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그 때문에 무능한 경영자를 징계하는 수단으로서 선거제안을 인정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적대적 M&A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많지 않으며, 또한 이른바 IMF사태를 겪으면서 경영자의 책임성 확보가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임제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입법상의 과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29)</sup>

3. 주주제안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권의 이사회 전속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제안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는 이사회가 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의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심사를 한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제안내용이 경영자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계할 경우에는 적법한 주주제안조차도 부당히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경영상의 과오나 경영자 개인의 위법·부당행위와 같은 비리 문제는 그 정도가 심각할수록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한편 경영자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실이 발각될

27) 김갑유, “각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人權과正義」 261호(1998) 10쪽.

28) Rauch v. Mobil Corp. 739 F. 2d 205(6th Cir. 1984)., SCI Systems, Inc., SEC No-Action Letter, 1992 SEC No-Act. LEXIS 875(Aug. 14, 1992).

29) 다만 해임제안까지 인정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이 회사경영권에 대한 도전수단(takeover)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것은 원칙론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남용의 가능성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 회사경영권에 도전하려는 자는 자신의 위협으로 그것을 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법의식, 즉 회사지배비용의 “사적당사자부담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takeover수단(예컨대 주식공개매수, 위임장권유)이 사실상 기능부재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현실적 문제로서 주주제안권에 대해 회사경영권에 대한 도전기회로서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지나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우 자신의 지위는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관해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면 경영자로서는 부당거절의 유혹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주주제안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는 가능한 한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제3의 기관(예컨대 감사·감사위원회)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배려는 없고 단지 사후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제(상법 635조 19의 3호)를 가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부당거절의 문제는 또한 위임장권유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당일 주주가 총회장에서 회사측의 제안과 다른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up>30)</sup> 그 때문에 회사측이 소집하는 주주총회를 위하여 위임장권유를 의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사전에 자신이 원하는 의제에 관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두지 않으면 위임장권유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측이 소집하는 주주총회를 위하여 위임장권유를 의도하고 있는 주주에 의해 이루어진 주주제안에 대한 부당거절은 단순히 부당거절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위임장권유를 저지하는 효과마저 갖게 된다.<sup>31)</sup>

#### IV.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로서 기능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의 문제점으로는 ①총회 출석주주에 한해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결의의 기회가 보장되는 점, ②지주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③이른바 사전제안제도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반대제안이 불가능한 점, ④해임제안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선임제안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점, 그리고 ⑤주주제안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권이 이해당사자인 이사회에 전속함으로써 이사회에 의한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거절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주제안권이 주주의 관심을 경영정책에 반영하거나, 혹은 무능한 경영자를 징계하고 경영결과에 대한 건전한 비판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특히 ① 및 ②의 경우는 주주의 총회출석률이 극히 저조한 대규모 공개 회사에 있어서 주주제안권이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전반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②의 지주요건

30) 그 이유는 첫째 주주총회 소집통지나 공고에 “총회의 목적사항”(의제)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 363조 2항 및 3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된 의제 및 이에 관한 의안으로 국한된다고 보고(통설), 둘째 대부분의 주주는 총회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된 의제나 이에 관한 의안을 보고 총회 참석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일 총회장에서의 제안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주주가 모르는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권유를 행하는 주주에게는 사전에 그 위임장권유사실을 회사측에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회장에서의 주주제안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의 문제와 이른바 “권고형 주주제안의 도입가능성”에 관해서만 검토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별도로 미루기로 한다.

### 1. 지주요건상의 문제

제안주주의 자격과 관련하여 지주요건으로서 높은 수준의 비율기준만<sup>32)</sup>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이 사실상 소수의 대주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밖에 의미가 없음은 전술한 대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먼저 (i) 비율기준을 최소한 주주총회소집청구권보다는 낮추어야 하며, 그리고 (ii) 절대수기준을 도입하여 낮추어진 비율기준과 절대수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1) 비율기준의 인하

그 이유를 말하면 먼저 (i)의 경우,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대체 보완하는 권리로서의 의미가 강하다.<sup>33)</sup> 그러므로 주주제안권의 지주요건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의 요건보다 낮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행 상법과 같이 양 권리의 지주요건이 같을 경우에는 주주로서는 특별히 주주제안권을 이용할 유인(incentive)이 없게 된다.

주주제안권은 회사측의 총회소집절차를 이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회사측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회사측에 청구하는 형태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경영자에 의한 부당한 개입의 위험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이용하면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따를지 몰라도 주주는 필요한 때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사측이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독자적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상법 366조 2항) 총회소집절차과정에서 경영자측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고, 또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사인의 선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동조 3항).

현행 증권거래법과 같이 높은 수준의 비율기준과 함께 지주기간요건을 병행할 경우 또 하나의 문제는 주주제안권의 행사 그 자체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한행사를 가장한 행위에 의해 저

32)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비록 1998년 주주제안에 관한 SEC규칙 개정에서 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제안주주의 지주규모가 3%를 넘을 경우에는 회사는 실제적 요건(§14a-8(i)) 가운데 제5호 및 (7)호(權鍾浩, (주 10)논문 참조)에 위반함을 이유로 주주제안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이 개정시안의 형태로 추진된 적이 있다(이른바 override provision). 그 이유는 이와 같이 “3% 이상”이라는 다수의 주주가 의제화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3%의 주주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See Proposed Release, supra note 6, at 13., Final Release, supra note 6, at 11.

33) I. 2. 참조.

지될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6개월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내 어느 한 시점에서만 그 비율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①설을 취하게 되면 지주기간 중에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나 사모에 의한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그 사채가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액기준이나 절대수기준을 병행하면 설령 지주기간기준을 현행 대로 존치시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없다.

## (2) 절대수기준의 병용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율기준과 함께 절대수기준이나 금액기준을 병용하고 있다.<sup>34)</sup> 흔히 비율기준은 남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절대수기준이나 금액기준은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비율기준을 채우기 쉬운 경우도 있겠지만, 대규모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비율기준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비율기준만 채택하면 주주제안권이 무용지물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액기준이 합리적이냐 절대수기준이 합리적이냐는 바로 주가가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도로서의 기능화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고주가인 경우에는 금액기준이 합리적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1998년 위임장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종래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한 금액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300주라는 절대수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가주의 하나인 SK텔레콤 주식(시가 200만원)에 적용하면 미국의 경우는 2주만 소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최소한 6억원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액기준을 채택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시장가격이 고가인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제안권이 사실상 단독주주권화할 염려가 있는데<sup>35)</sup>, 이는 아무래도 남용방지나 회사자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주요건에 관하여 제도로서의 기능화측면과 남용방지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기준은 문제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합리적이기만 하면 절대수기준쪽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다만 절대수기준을 채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지만,

34) (주 24)참조.

35)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에서는 1998년 주주제안에 관한 위임장규칙 개정과정에서 금액기준을 2000달러로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주가상승률이나 물가의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SEC는 주주제안제도의 목적이 "적은 지분을 갖진 주주에게 커뮤니케이션의 기회"(an avenue of communication for small investors)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들어 2000달러로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Final Rule, supra note 6, at 9). 이는 철저히 주주제안권의 "제도로서의 기능화라는 측면"만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소한 일본보다는 높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일본보다는 이른바 오너자본주의 형태의 회사지배구조로 인하여 대주주의 독주와 경영자의 전횡 등의 폐해가 심각하고<sup>36)</sup>, 그런 만큼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주주의 권익보호 요청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 2. 권고형제안의 도입여부

그 외 주주제안권은 기업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당화될 수 있는 주주운동을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흡수하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임은 전술한 대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특히 권고형으로 이루어지는 제안(즉 권고형제안)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주주운동의 관심사인 사회적 문제에 관해서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주주제안에 관한 정의규정인 § 14a-8(a)에서 주주제안권을 “회사측이 취해야 할 행위에 관한 주주의 권고 혹은 요구”(recommendation or requirement that the company and/or its board of directors take action)로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 요건에 관한 규정인 § 14a-8 (i) Question 9의 (1)항 註釋(Note)에서는 주주제안이 구속형(binding)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배제사유에 해당할 사항이라도 권고나 제언의 형태(proposal drafted as a recommendation or suggestion)로 이루어지면 적법한 주주제안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고형제안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주제안의 대상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법규정과의 관계상 권고형 주주제안은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sup>37)</sup>, 우리나라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up>38)</sup>

생각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형제안에 관한 명문규정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해석론상으로는 권고형제안이 인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순수 이론적 측면에서만 보면 권고형제안을 인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다. 미국에서 권고형제안이 광범위

36) 일본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해체와 관련하여 회사의 실질적 오너가 없다는 점과 경영자의 전횡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오히려 종업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관행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大杉謙一・權鍾浩譯, “일본의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원칙」에 관하여” 「比較私法」 제6권 2호(韓國比較私法學會, 1999) 153쪽 참조.

37) 鄭義鐘, (주 20) 63쪽.

38) 다만 일본의 경우에도 해석론상으로도 권고형제안은 허용된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森田章, “提案權による株主提案の範圍 — 勸告的提案の可能性 —” 「商事法の解釋と展望」(上柳克郎先生還曆記念・有斐閣 1982) 69쪽은 기관권한분배원칙에 관해 적어도 대규모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강행법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관권한분배원칙에 의해 경영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형의 주주제안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비구속형의 권고형 제안만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江頭憲治郎, 「註釋會社法(5)」(有斐閣・1988) 26쪽은 일본상법이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기관권한분배원칙의 범규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해석론상으로는 권고형제안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게 인정된 것은 제안범위에 대한 제한, 즉 실체적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sup>39)</sup>,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제안의 대상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국한되지만, 총회결의 사항은 회사의 본질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으므로(통설), — 즉 실체적요건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없으므로 — 굳이 권고형제안을 인정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권고형제안의 도입에 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주주제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주주로서는 구속형으로 제안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sup>40)</sup> 경영자의 고유권한사항의 경우에는 오히려 구속형의 제안은 금지하고 권고형제안만 인정하는 쪽이 경영자 고유권한 보호와 주주제안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권고형제안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회사의 경영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론적 시각에서 보면 권고형제안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경영자고유권한사항에 관해서는 구속형의 주주제안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V. 결어

주주제안권은 원래가 그것이 실제로 결의로서 성립했을 때 보다는 그 과정에서 주주 상호간 혹은 주주와 회사간의 대화(communication)을 촉진하는 것, 즉 "열린 주주총회의 실현"에 그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sup>41)</sup>

그런 의미에서 (i) 주주제안권에 대한 법규제는 기본적으로 남용의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주주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ii) 주주제안권이 경영자에게 있어서도 의미를 갖기를 위해서는 무능한 경영자를 징계하는 수단으로서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iii) 주주제안권이 경영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수단으로서도 기능하기를 바란다면 회사측의 제안에 대해 수정, 변경 혹은 반대할 수 있는 기회로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iv)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경영자에 의한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거절이 없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주주

39) 미국에서 권고형제안이 광범위하게 인정된 주된 원인은 이른바 사회문제에 관한 제안(사회제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회제안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속형으로 제안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실체적 요건(상세는 權鍾浩, (주 10)논문 36쪽 참조) 위반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Loss 교수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ee Manne, Shareholder Social Proposals Viewed by an Opponent, 24 Stan. L. Rev. 481, 486(1972).

40) (주 22) 참조.

41) 末永敏和, 「株主總會の法理論」(日本評論社, 1991) 10쪽, 前田重行, (주 5) 177쪽.

제안에 대한 적법성의 심사는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제3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가) 제안주주의 자격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나) 임기중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제안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이는 증권거래법에 한함) 주주제안권이 무능한 경영자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다) 이른바 사전제안제도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주주제안권이 경영에 대한 감시·비판수단으로서 제기능을 다하는 것 역시 곤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라) 주주제안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권 조차 이해당사자인 이사회에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에 재량권남용과 부당거절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주제안권에 대한 법규제가 증권거래법과 상법으로 이원화되면서도 증권거래법상의 규제의 경우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2)</sup>

증권거래법은 주지하다시피 대규모 공개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 공개회사는 “주주의 총회출석률이 저조한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는 이러한 공개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를 위하여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주주제안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안주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함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주주제안권에 대한 증권거래법상의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폐쇄회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상법과 구별되는 규범으로서 존재의의를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주제안권을 회사측이 소집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새로운 의제나 의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서만 구성할 뿐 제안사항에 관해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서면까지 주주에게 제공되는 권리로서는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제안이유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도 오로지 총회장에서의 구두설명만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제안권은 기본적으로 주주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주제안권은 유감스럽게도 제도 도입 그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주주제안권이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의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주주제안권이 제기능을 다하기를 원한다면 입법론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李哲松, “98년 改正 會社法の 概觀” 「人權과正義」 제270호(大韓辯護士協會誌, 1999) 14쪽은 입법론적 관점에서 상법이 주주제안권을 인정한 이상, 주주제안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요인을 안고 있는 증권거래법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參考文獻〉

- 權鍾浩, "우리나라 株主提案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制度로서의 機能化 측면을 中心으로 —" 「上場協」, 韓國上場會社協議會, 2000 春季號.
- , "經營者監視手段으로서 委任狀勸誘의 實效性 — 株式公開買受 및 株主提案權과의 比較를 통하여 —" 「商事法研究」 17권 1호, 韓國商事法學會, 1998.
- 김갑유, "각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人權과正義」 261호, 대한변호사협회, 1998.
- 金元基, "상법(개정안)상의 株主提案權" 「考試研究」, 1998. 10.
- 朴贊雨, "株主提案權" 「比較私法」 제6권 1호, 韓國比較私法學會, 1999.
- 李哲松, "98년 改正 會社法의 概觀" 「人權과正義」 제270호, 大韓辯護士協會誌, 1999.
- , "少數株主權의 實效性 檢討" 「上場協」 35호, 韓國上場會社協議會, 1997 春季號.
- 李泰魯·李哲松, 「會社法講義」 [제7판], 1999.
- 鄭義鏡, "改正 商法상의 株主提案權" 「人權과正義」, 大韓辯護士協會, 1999.
- 證券監督院, 「證券去來法 改正內容 解說」, 1997.
- 崔基元, "改正證券去來法과 商法特例規定" 「人權과正義」 248호, 大韓辯護士協會誌, 1997.
- 大杉謙一·權鍾浩譯, "일본의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원칙」 에 관하여" 「比較私法」 제6권 2호, 韓國比較私法學會, 1999.
- 末永敏和, 「株主總會의 法理論」, 日本評論社, 1991.
- 森田章, "提案權による株主提案의 範圍 — 勸告的提案의 可能性 —" 「商事法の解釋と展望」, 上柳克郎先生還曆記念, 有斐閣, 1982.
- 江頭憲治郎, 「註釋會社法(5)」, 有斐閣, 1988.
- 前田重行, 「株主總會制度의 研究」, 有斐閣, 1997.
- Comment, The 1983 Amendments to Shareholder Proposal Rule 14a-8: A Retreat from Corporate Democracy?, 59 Tul. L. Rev. 161, 162-64, 194-95, 1984,
- Lewis D. Solomon·Donald E. Schwartz·Jeffrey D. Bauman·Elliott J. Weiss, Corporation Law and Policy—Materials and Problems(4th Ed.), West Group, 1998.
- Lewis D. Solomon·Alan R. Palmiter, Corporations(2th Ed.), Little, Brown & Company, 1994.
- Manne, Shareholder Social Proposals Viewed by an Opponent, 24 Stan. L. Rev. 481, 486, 1772.
- SCI Systems, Inc., SEC No-Action Letter, 1992 SEC No-Act. LEXIS 875(Aug. 14, 1992).

權 鍾 浩 : 우리나라 株主提案制度에 관한 小考

---

<http://www.sec.gov/rules/proposed/34-39093.htm>,

<http://www.sec.gov/rules/final/34-40018.htm>